

첨부 고시문 사본 2부. 끝.

서울특별시

(제 3안)

수신 건설교통부장관

참조 주택관리과장

제목 수색제2주택개발제한구역제2지구 사업계획변경결정 보고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 1) 및 동고시 제592호('87.11.20)로 구역지정 및 변경지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153호('89. 3.27)로 지적승인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36호('90. 7.16)로 사업계획결정되고 동고시 제1995-144호('95. 5.26)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되어 동고시 제1995-337호('95.12. 8)로 구역변경지정(단순면적정정) 및 사업계획변경결정된 수색제2주택개발제한구역제2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이를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고시문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

(제 4안)

수신 은평구청장

참조 주택과장

제목 수색제2주택개발제한구역제2지구 사업계획변경결정 통보

1. 주택 58531-2079호('95.12.13)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사업계획변경결정 신청한 수색제2주택개발제한구역제2지구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사업계획변경결정 및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관계도서들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관련부서에 알리어 도시계획관련업무 수행에 착오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 사본 1부. 끝.

서울특별시

(제 5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수색제2주택개발구역제2지구 사업계획변경결정 통보

우리시 은평구 수색제2주택개발구역제2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결정 및 고시하였기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 사본 1부. 끝.

주 택 개 량 과 장

수신처 도시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공원과장, 도로계획과장

주책주장

고 시 (안)

21	1996.1.5	제 3 호
담당자	법제제장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 5 호

수색제2주택개량재개발구역제2지구 사업계획변경결정

1. 건설부고시 제470호('73.12. 1) 및 동고시 제592호('87.11.20)로 구역지정 및 변경지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153호('89. 3.27)로 지적승인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36호('90. 7.16)로 사업계획결정되고 동고시 제1995-144호('95. 5.26)로 사업계획변경결정되어 동고시 제1995-337호('95.12. 6)로 구역변경지정(단순면적정정) 및 사업계획변경결정된 수색제2주택개량재개발구역제2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결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과와 은평구 주택과·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6년 1월 일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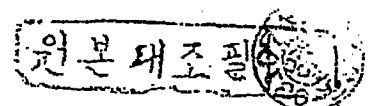
가. 사업의 명칭 : 수색제2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 은평구 수색동 산 31번지 일대

다. 시행면적 : 10,646㎡

라.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

(1) 도로결정조서 : 변경없음(종전과 같습니다.)



마. 건축계획

구분	획지 구분	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주된 용도
당초	택지 1	9,006	25 이하	295 이하	19층 이하 62m 이하	공동주택(분양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택지 2	1,328	20 이하	220 이하	19층 이하 62m 이하	공동주택(임대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택지 1	9,006	29 이하	295 이하	19층 이하 62m 이하	공동주택(분양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택지 2	1,328	20 이하	220 이하	19층 이하 62m 이하	공동주택(임대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바. 사업계획변경결정도면(생략) : 변경없음(종전과 같습니다.)